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

근로·자녀장려금

5월에 꼭 신청하세요!

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원 지급 **자녀장려금**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

신청대상
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(뒷면 참조)

※ '23.9월 또는 '24.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음

신청기간

2024. 5.1. ~ 5.31. ➡ 8월말 지급

※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% 감액됩니다.

신청방법

① 신청안내문 : 모바일·우편

② ARS(자동응답전화) : ☎ 1544-9944

③ 홈택스(모바일·PC) : www.hometax.go.kr

④ 장려금 상담센터 : ☎ 1566-3636(고령자·중증장애인 신청 대리)

상 담

장려금 상담센터 ☎ 1566-3636

(5.2.~5.31. 평일 9~18시)

신청안내대상 여부확인

신청요건 동영상

※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(계좌비밀번호 등)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(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)에 주의하세요

신청자격 (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)
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*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* 다만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

가구유형

2023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

단독가구	배우자[1]와 부양자녀[2], 70세 이상 직계존속[3]이 모두 **없는** 가구
홑벌이가구	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**있는**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**신청인 또는 배우자**의 총급여액 등이 **3백만원 미만**이어야 함)
맞벌이가구	**신청인과 배우자 각각**의 총급여액 등[4]이 **3백만원 이상**인 가구

1)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

2)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

3)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·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,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

*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(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)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
4) 총 급여액 등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의 합계액

소득요건 (부부합산)

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*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

〈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〉

구분	근로장려금		자녀장려금	
	총소득 기준금액	최대지급액	총소득 기준금액	최대지급액
단독가구	2,200만 원 미만	165만 원	해당없음	
홑벌이가구	3,200만 원 미만	285만 원	7,000만 원 미만	자녀1인당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맞벌이가구	3,800만 원 미만	330만 원		

* 총소득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·퇴직·양도소득은 제외

재산요건 (가구원 합산)

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*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(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,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% 감액)

* 1세대(가구)의 범위 – 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 ②,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

기타요건

1)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
2)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
3)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(근로장려금만 해당)

*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〉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〉 근로·자녀장려금정기산청 〉 계산해보기에서 가능

유의사항

1. 소득·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.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(배우자포함)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3.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4.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%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.
5.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